

예 산 총 칙

2017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762,664,755 | 22,879,943 |
| 일반회계 | 470,921,963 | 14,127,659 |
| 특별회계 | 291,742,792 | 8,752,284 |
| 기타특별회계 | 291,742,792 | 8,752,284 |
|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| 986,785 | 29,604 |
| 주차장특별회계 | 349,391 | 10,482 |
|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| 2,697,575 | 80,927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| 216,128,641 | 6,483,859 |
|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| 1,290,423 | 38,713 |
| 치수사업특별회계 | 385,232 | 11,557 |
|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| 718,201 | 21,546 |
|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| 69,186,544 | 2,075,596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3,015,215천원으로 한다.

일반회계 재해 재난목적예비비는 1,5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0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경비,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간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수 있다.